

學校給食 現況과 改善方向

朴 俊 教

阿峴中學校 校長

學校給食 現況

가. 學校給食의 意義 및 必要性

1) 健康增進 健全한 成長發達圖謀

體格·體質·體力の 向上: 질병 발생을 저하.

成長의 극대화: 身長·體重의 증가.

國民體力の 根幹構築: 국민건강 증진 및 體位向上.

2) 教育적 意義: 知德體의 全人教育의 場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 學校生活을 풍성(밝게, 바르게)하게 함.

學歷의 向上: 學校生活의 만족감(학교생활을 명랑하게 함), 결석 감소,

學習環境改善: 學習意慾 고조.

道德的인 態度함양(바람직한 人性陶冶: 道德的인 人性和 實踐力 培養의 教育場.

- 第1次的인 '善'인 天賦의 生命權 유지: 差等意識 排除, 人權의 同等, 相互존중의식
고취로 民主市民意識과 자질의 함양.

- 共同體(일체감)意識, 社會性 계발: 소속감, 協同心, 責任感, 근면성, 봉사성, 감사하
는 마음 배양.

- 사제간의 誼, 급우간의 우애돈독: 바른 인간 관계 함양.

基本的 생활습관의 함양: 주변 정리정돈, 질서지키기, 分擔活動, 식사예절, 급식당번활
동, 위생관리, 食生活 習慣 및 태도.

營養教育의 場

- 食品의 生産과 消費에 대한 이해.

- 올바른 영양지식: 편식 교정으로 바람직한 食性함양.

- 合理的 食生活(習慣, 態度) 영위 기초확립: 식품의 영양가 및 기능이해, 균형적 섭취
의 生活化등 食生活 合理化에 대한 이해 도모.

3) 社會的인 의의

산협화 시대 요청에 따른 集團給食 先導 및 適應.

國民營養教育의 道具: 學生, 學校, 지역사회에 영양지식 보급, 식·위생 관리등

: 식단표 配付

조리참여

영양교육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
 식량생산 소비 합리화 : 식량수급정책에 기여.

나. 學校給食의 目的 및 目標

1) 學校給食法에 明示된 目的

學校給食을 통한 學生의 心身의 健全한 發達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法 第1條).

영양교육을 통한 食習慣의 개선(法 第3條)

2) 학교급식 실시의 目標

基本的인 目標 : 성장기 아동들의 부적당한 영양상태를 감소시켜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발달의 촉진.

長期的 目標 : 보다 좋은 食習慣에 적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식량소비의 合理化와 食생활 改善을 가능케 하여 국가의 食량소비 합리화 및 食량수급에 元활을 기하게 하여 국가 食량사정 개선에 功헌하도록 함.

다. 우리나라 學校給食의 變遷

우리나라 學校給食은 6.25 이후 經濟事情이 어려운 시기인 1953년에 戰災兒童의 救護 給食을 위하여 國際兒童會(UNICEF) 世界民間救護協會(CARE), 美國國際開發處(USAID) 등의 기관이 支援하는 糧穀(脫脂粉乳를 비롯한 옥수수가루, 食油, 小麥粉등)으로 國民學校 兒童에게 無償給食을 實施한 것이 그 始初이다.

그후 1972년까지 약 20年間 外國援助에 의한 救護의 形態로 給食이 實施되었으며 1973 年에 이르러 外援이 끝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부담에 의한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는 自立形態의 급식으로 비로소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후 지금까지 약 37년간의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救護給食期(1953~1972년), 自立給食期(1973~1977년), 制度確立期(1978~1982년), 給食管理體系轉換期(1982-1989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라. 學校給食 實施現況

1) 給食 類型別 現況 및 負擔 形態

類型別 現況('90)

구 분	학 교 수 (校)			학 생 수 (명)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유 형						
도서벽지형	2,497	392	15.7	278,010	56,981	20.5
농어촌형	3,282	237	7.2	1,040,609	86,912	8.5
도시형	1,860	136	7.3	3,575,688	153,944	4.3
계	7,639	765	10.0	4,894,307	297,837	6.1

類型別 負擔形態('90)

구 분	국 고 부 담	학부모 부담	전담직원 배치
유 형			
도서벽지형	• 시설비, 인건비 • 연료비(1인 17원)	-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 식품비(471원)		
농 어 촌 형	• 시설비, 인건비 • 연료비(1인 20원) • 식품비(157원)	• 식품비 일부부담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조리종사원 1인
도 시 형	• 시설비, 인건비 • 연료비(1인 20원) • 식품비(-)	• 식품비 전액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조리종사원 1인 제빵기사 1인
비 고	• 법 제8조 2(경비부담) • 시행령 제7조(급식 경비 부담)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는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현재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 급식학교 유형에 따라 도서벽지형은 전액, 농어촌 1/3은 국가에서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어촌형 2/3와 도시형은 식품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함).

2) 급식내역 및 예산('90)

급식회수 : 주 5일, 년 180일
 급식내용 : 주식 및 부식
 급식방법 : 교내 식당 또는 교실 급식
 급식예산 : 총 10,479,000천원

3) 運營組織

1982년 3월 체육부로 이관되었던 學校給食 업무관장이 1990年 政府組織法改正에 따라 文敎部로 환원되어 현재 문교부 보통 교육국 의무교육과 내에 학교보건업무와 함께 잠정적으로 분장.

改善方向

가. 學校給食實施關係法 改定

- 1) 給食對象擴大
 의무교육대상 學生 전면확대
 中高校(특히 야간고) 점차 확대 : 實驗學校 運營 試圖
- 2) 給食費負擔原則
 국고 지방재정, 수익자 부담 안배.
 도서벽지형 급식비 수익자 부담.
- 3) 營養 및 管理 基準 : 한국인 영양권장량 기준으로 適正
- 4) 결식아동 급식흡수 검토

나. 行政 및 運營組織의 강화 : 원활한 운영 모색

- 1) 地自制에 따른 권한, 관리 위임 · 지방조직 강화 · 教委水準에 學校給食專擔 부서설치
- 2) 전문직(보건직 : 영양전공자) 참여 확대

- 3) 장학과 연계지도 : 學校給食 및 營養教育實施
- 4) 학교 보건과의 분리 : 직제상 학교급식 업무관장 독립조치.

다. 학교급식 영양교육 지도 강화(法 第 條)

- 1) 교원대학 양성과정 교과 반영
- 2) 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에 반영.
- 3) 교원대학 부속국교 급식지도자료 活用.

라. 개원확보의 원활

- 1) 특별비 확보 방안 강구 : 학생 복지 증진
- 2) 급식품 조달체계 확립
- 3) 급식품 면세조치 : 교육용.
- 4) 농수산 특별회계 지원모색 : 낙농, 축산물, 곡류 등 主要食品.

마. 施設, 設備의 大量化, 現代化

- 1) 調理의 규모 대량화.
- 2) 식품, 식기 등 기구의 위생 안전관리 도모.
- 3) 중앙공급 형태(급식센터) 개발 및 급식시설 공동사용 방안 모색 : 실험형태.
- 4) 신설국민학교 급식시설 확보 의무화 검토.

바. 學生 食行態 變化에 따른 食單의 改善

- 1) 기본영양 결핍 예방
- 2) 과잉섭취 예방
- 3) 선진 식품 및 Fast food에 대한 대응책 : 兒童 기호의 變化.
- 4) 전통음식의 계승
- 5) 즐거운 급식으로 전환 : 맛, 모양, 매력

사. 凡國民的 理解 및 支援體制 강화

- 1)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團體食의 요청증대.
- 2) 학교급식 연구기관 또는 財團, 設立 권장 :
 - 研究費 등 전문 지원기능 개발.
 - 學術團體協力體制 구축 : 營養學會, 食品學會, 保健學會 등
- 3) 弘報증대 : 大衆媒體 참여 유도.

아. 從事員의 地位向上

- 1) 專門性 提高
- 2) 處遇改善
- 3) 조리종사원 확보 현실화